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. 9. 30 선고 2020가합115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공봉학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규동

변 론 종 결 2021. 8. 19.

판 결 선 고 2021. 9. 30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주식회사(이하 'C'라고만 한다)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

이 유

원고는, 원고가 C의 채권자인데, C는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

피고에게 양도하였고,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사경화, 판사 나소라, 판사 조재혁

별 지 목 록

번호	채비지 표시	등기목적	등기접수일	등기원인	권리자및기타사항
1	포항시 북구	근저당(담보)설정	2011. 1. 28.	2011. 1. 28. 담보설정계약	은행
	1,283.2㎡				
2	포항시 북구	근저당(담보)설정	2011. 1. 28.	2011. 1. 28. 담보설정계약	은행
	1,134.7㎡				
3	포항시 북구	근저당(담보)설정	2012. 6. 29.	2012. 6. 29. 담보설정계약	은행
	662.9㎡				
4	포항시 북구	근저당(담보)설정	2012. 6. 29.	2012. 6. 29. 담보설정계약	은행
	638.8㎡				
5	포항시 북구	근저당(담보)설정	2012. 6. 29.	2012. 6. 29. 담보설정계약	은행
	746.5㎡				
6	포항시 북구	근저당(담보)설정	2011. 1. 28.	2011. 1. 28. 담보설정계약	은행
	974.5㎡				
7	포항시 북구	근저당(담보)설정	2011. 1. 28.	2011. 1. 28. 담보설정계약	은행
	1,607.6㎡				
8	포항시 북구	근저당(담보)설정	2011. 1. 28.	2011. 1. 28. 담보설정계약	은행
	1,500.5㎡				

